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제안이유

가. 인증 기준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16551호, 2019. 8. 27. 공포, 2020. 8. 28. 시행)**됨에 따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유기식품등,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축수산물등의 인증을 받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유기식품등,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축수산물등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약이 검출되어 3년 동안 2회 이상 인증취소를 받은 자에게 그 판매금액의 100분의 50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하는 세부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나. 과태료 상한액을 가벌성이 유사한 행위별로 세분화하는 내용으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16991호, 2020. 2. 11. 공포, 2020. 8.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습위반자 과징금 부과 세부 산출기준 및 징수 절차 기준 등 세부 기준 마련 신설(안 제3조의2, 별표 1)

나. 과태료 상한액을 세분화하여 개정됨에 따라 위반행위별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 2)

다. 법률 개정에 따른 각 기관별 권한 위임 규정 정비(안 제5조)

3. 관련예상쟁점

가. 관계부처 입장 : 해당 없음

나. 관련 단체 등 입장 : 해당 없음

다. 쟁점 대응방안 : 해당 없음

4. 참고사항

가. 추진일정(안)

1) 개정안 확정 : '20. 1월

2) 관계부처협의 : '20.1.14 ~ 1.28 / 2.12 ~ 2.24

3) 입법예고 : '20. 3~4월

4) 법제처 제출 : '20. 6월

5)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 '20. 7월

나. 규제관련 검토사항 : 해당 없음

다. 재정수반 여부 : 해당 없음

라. 기　　타 : 개정안, 별첨

대통령령 제 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6조"를 "제1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축산물, 무항생제수산물"을 "유기식품등, 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무항생제축산물·무항생제수산물"로, ""무농약농수산물등"이라 한다) 또는 유기식품등"을 ""무항생제축수산물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에 따라 유기식품 또는 비식용유기가공품의 소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①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과징금을 낼 것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자는 납부 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의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경제 여건이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있는 경우
3.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면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 납부를 하려는 자는 그 납부기한의 5일 전까지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 납부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⑦ 제4항에 따라 분할 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 각 분할된 납부기한의 간격은 4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 납부가 허용된 과징금의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 납부하기로 결정된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2.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등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⑨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말한 다”를 “말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법 제23조의2제1항”을 “법 제23조의2제1항 및 제4항”으로, “(비식용유기가공품은”을 “(비식용유기가공품 및 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평가 실시 결과 보고(제5조제2항제1호의 실태조사 및 평가에 한한다)

제5조제3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평가 실시 결과 보고(제5조제3항제1호의 실태조사 및 평가에 한한다)

제5조제3항제6호 중 “법 제16조”를 “법 제16조제1항”으로, “유기식품등”을 “유기식품등, 무농약원료가공식품”으로 한다.

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조제2호”를 “제3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호의2를 제1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의3 중 “비식용유기가공품”을 “비식용유기가공품 및 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료”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취소 및 인증표시의 제거·정지 명령”을 “취소, 인증표시의 제거·정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1호의4 중 “취소·정지”를 “취소, 자격정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2호 중 “법 제27조제2호”를 “법 제27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법 제27조제4호”를 “법 제27조제1항제4호”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 중 “법 제27조제5호”를 “법 제27조제1항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16호 중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지정

취소, 업무정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으로 하며, 같은 항 제17호 중 “인증품에 대한 시판품조사”를 “판매ㆍ유통 중인 인증품등에 대한 조사”로, “인증사업자”를 “인증사업자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8호의2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8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0호 중 “시정조치 명령,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지정취소, 업무정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20호의2 중 “법 제32조의2제1항”을 “법 제32조의2제1항 및 제2항”으로, “평가ㆍ등급결정 및 결과 공표”를 “평가ㆍ등급결정, 결과 공표 및 등급결정 결과에 따른 인증기관의 관리ㆍ지원ㆍ육성”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20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2호 중 “무농약농수산물등”을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축산물 및 무농약원료가공식품”으로 하며, 같은 항 제23호의4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3호의2 및 제23호의3을 각각 제23호의3 및 제23호의4로 하며, 같은 항 제23호의5부터 제23호의10까지를 각각 제23호의8부터 제23호의13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3호의2, 제23호의5, 제23호의6 및 제23호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3호의3(종전의 제23호의2) 및 제23호의4(종전의 제23호의3) 중 “유기농어업자재”를 각각 “유기농업자재”로 하고, 같은 항 제23호의13(종전의 제23호의10) 중 “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 업무정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으로 하며, 같은 항 제24호 중 “유기농어업자재에 대한 시판품조사, 공시사업자”를 “판매ㆍ유통 중인 공시 받은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조사, 공시사업자등”으로, “공시사업자에”를 “공시사업자등에”로 하고, 같은 항 제25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5호의2 및 제2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5호의4부터 제25호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6호의2 중 “유기농어업자재”를 “유기농업자재”로 하고, 같은 항 제2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8호 중 “법 제5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법 제56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9호 중 “인증심사원의 자격 취소 및”을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인증심사원의 자격 취소,”로 하고, 같은 항에 제2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ㆍ훈련, 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관리 및 지원

1의2.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

6의2. 법 제23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수입 유기식품등 중 비식용 유기가공품 및 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료의 신고 수리

8의2.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11의5. 법 제26조의4제1항(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교육

18. 법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사업자등에 대한 조사결과 통지, 재검사 요청 접수, 재검사 여부 결정 통보 및 재검사 결과 통보

18의3. 법 제31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사업자등에 대한 조치 명령, 인증품등의 압류 조치 및 조치 명령의 내용 공표

20의3. 법 제33조제2항 및 제3항(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위 승계 신고의 수리 및 통지

23의2.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제한적인 무농약 표시의 허용

23의5. 법 제41조의2제2호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에 대한 접근 및 정보·자료 제공의 요청

23의6. 법 제41조의3제1항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에 대한 조사

23의7.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시의 취소, 판매금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

25의2. 법 제4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공시사업자등에 대한 조사결과 통지, 재검사 요청 접수, 재검사 여부 결정 통보 및 재검사 결과 통보

25의3. 법 제49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에 따른 공시사업자등에 대한 조치 명령, 유기농업자재의 압류 조치 및 조치 명령의 내용 공표

25의4.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공시기관에 대한 조사

25의5.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공시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업무정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

25의6. 법 제5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시기관의 지위 승계 신고의 수리 및 통지

27. 법 제54조에 따른 인증제도 활성화에 관한 사항 추진 및 필요 자금 지원

29의2.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인증사업자의 인증 취소 및 공시사업자의 공시취소에 대한 의견제출 기회 부여 및 청문

제5조제5항 중 “제3조제1호”를 “제3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를 제1호의3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1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20조제3항부터 제5항”을 “법 제20조제3항, 제6항부터 제8항”으로, “재심사”를 “재심사, 재심사 여부 결정 통보, 재심사 결과 통보”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을 “법 제21조제2항부터 제6항”으로, “포함한다)”를 “포함한다)까지의 규정”으로, “갱신 및”을 “갱신,”으로, “연장”을 “연장, 재심사, 재심사 여부 결정 통보 및 재심사 결과 통보”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취소 및 인증표시의 제거·정지 명령”을 “취소, 인증표시의 제거·정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1호의4 중 “취소·정지”를 “취소, 자격정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1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법 제27조제2호”를 “법 제27조제1항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 중 “법 제27조제4호”를 “법 제27조제1항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 중 “법 제27조제5호”를 “법 제27조제1항제5호”로 하며, 같은 항 제16호 중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지정취소, 업무정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17호 중 “인증품에 대한 시판

품조사”를 “판매ㆍ유통 중인 인증품등에 대한 조사”로, “인증사업자”를 “인증사업자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8호의2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18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0호 중 “시정조치 명령,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지정취소, 업무정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으로 하며, 같은 항 제20호의2 중 “법 제32조의2제1항”을 “법 제32조의2제1항 및 제2항”으로, “평가ㆍ등급결정 및 결과 공표”를 “평가ㆍ등급결정, 결과 공표 및 등급결정 결과에 따른 인증기관의 관리ㆍ지원ㆍ육성”으로 하고, 같은 항 제21호 중 “수리”를 “수리 및 통지”로 하며, 같은 항 제22호 중 “무농약농수산물등”을 “무항생제수산물ㆍ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로 하고, 같은 항 제24호의2 중 “유기농어업자재”를 “유기어업자재”로 하며, 같은 항 제2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7호 중 “따른”을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로 하며, 같은 항에 제2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따른 교육ㆍ훈련, 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관리 및 지원

1의2.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

8의2.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11의5. 법 제26조의4제1항(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교육

18. 법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사업자등에 대한 조사결과 통지, 재검사 요청 접수, 재검사 여부 결정 통보 및 재검사 결과 통보

18의3. 법 제31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사업자등에 대한 조치 명령, 인증품등의 압류 조치 및 조치 명령의 내용 공표

26. 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의 수납

27의2.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인증사업자의 인증 취소에 대한 의견제출 기회 부여 및 청문

제5조제5항제28호 중 “법 제20조제5항”을 “법 제20조제8항”으로, “제27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제27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1의2.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평가 실시 결과 보고(제5조제6항제1호의 실태조사 및 평가에 한한다)

제5조의2제1항제2호 중 “법 제16조”를 “법 제1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제1호의2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31조제4항”을 “법 제31조제7항”으로,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품의 유통업자”를 “인증사업자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49조제4항”을 “법 제49조제7항”으로, “공시사업자 또는 유기농어업자재의 유통업자”를 “공시사업자등”으로 한다.

1.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제6조 중 “별표와”를 “별표 2와”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

과징금의 부과기준(제3조의2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과징금 부과기준은 법 제2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최근 3년 동안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횟수는 위반행위를 한 인증사업자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 과징금 부과 대상은 2회 적발된 당시 인증의 유효기간 동안 유기식품등ㆍ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축수산물등(이하 “인증품”이라 한다)으로 판매한 물량(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운반 또는 진열 중인 물량은 제외한다)으로 하며, 3회 이상부터는 이전에 부과한 물량을 제외하고 해당 인증의 유효기간 동안 인증품으로 판매한 물량으로 한다.

2. 과징금 산정ㆍ부과 기준

가. 판매금액은 제1호다목의 부과 대상 물량에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통관 단계 인증품의 판매금액은 세관 수입신고 금액으로 한다.

나. 판매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인근 인증사업자 3곳 또는 판매업체 3곳의 동일 품목 판매가격의 평균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평균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증을 받지 않은 동일 품목의 인근 판매업체 3곳의 평균 판매가격에 5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 산정은 가목 및 나목의 기준에 따라 계산된 판매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별표를 별표 2로 한다.

별표 제2호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단위: 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법 제20조제8항(법 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해당 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한 자	법 제62조 제3항 제1호	100	200	300
나. 법 제22조제1항(법 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인증품의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 실적을 알리지 아니한 자	법 제62조 제4항 제1호	30	50	100
다. 법 제22조제2항(법 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관련 서류·자료 등을 기록·관리하지 아니하거나 보관하지 아니한 자	법 제62조 제4항 제2호	30	50	100
라. 인증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인증품의 포장을 해체하여 재포장한 후 법 제23조제1항 또는 제36조제1항에 따른 표시를 한 자	법 제62조 제2항 제1호	150	300	500
마. 법 제23조제1항 또는 제36조제1항에 따른 표시기준을 위반한 자	법 제62조 제4항 제3호	30	50	100

바. 법 제23조제3항 또는 제36조제2항에 따른 제한적 표시기준을 위반한 자	법 제62조 제2항 제2호	150	300	500
사. 법 제26조제5항 본문(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법 제62조 제4항 제4호	30	50	100
아. 법 제26조제5항 단서(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중요 변경사항을 승인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자	법 제62조 제3항 제2호	100	200	300
자. 법 제27조제1항제3호(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법 제62조 제2항 제3호	150	300	500
차. 법 제27조제1항제4호(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인증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 등을 거짓으로 보고한 자	법 제62조 제2항 제4호	150	300	500
카. 법 제27조제1항제4호(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인증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 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법 제62조 제3항 제3호	100	200	300
타. 법 제27조제1항제5호(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불시 심사 결과를 기록·관리하지 아니한 자	법 제62조 제2항 제3호	150	300	500
파. 법 제27조제2항제2호(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인증심사업무를 한 자	법 제62조 제2항 제5호	150	300	500
하. 법 제27조제2항제3호(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인증심사업무 결과를 기록하지 아니한 자	법 제62조 제2항 제6호	150	300	500
거. 법 제28조(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인증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	법 제62조 제2항 제7호	150	300	500
너.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1조제1항(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법 제62조 제2항 제8호	150	300	500
더.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2조제1항(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법 제62조 제1항	300	500	1,000
러. 법 제33조(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하고도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법 제62조 제2항 제9호	150	300	500
머. 법 제33조(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인증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도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법 제62조 제3항 제4호	100	200	300
버. 법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시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시를	법 제62조 제3항	100	200	300

받은 내용을 변경한 자	제1호			
서.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시를 받은 유기농어업자재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 실적을 알리지 않은 자	법 제62조 제4항 제1호	30	50	100
어. 법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련 서류 등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법 제62조 제4항 제2호	30	50	100
저. 법 제41조의2제3호를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법 제62조 제2항 제3호	150	300	500
처.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41조의3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법 제62조 제1항	300	500	1,000
커. 법 제42조에 따른 표시기준을 위반한 자	법 제62조 제3항 제5호	100	200	300
터. 법 제44조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법 제62조 제4항 제4호	30	50	100
퍼. 법 제44조제4항 단서를 위반하여 중요 변경사항을 승안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자	법 제62조 제3항 제2호	100	200	300
허. 법 제45조제3호를 위반하여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법 제62조 제2항 제3호	150	300	500
고. 법 제45조제4호를 위반하여 공시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 등을 거짓으로 보고한 자	법 제62조 제2항 제4호	150	300	500

노. 법 제45조제4호를 위반하여 공시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 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법 제62조 제3항 제3호	100	200	300
도. 법 제45조제5호를 위반하여 관련 불시 심사 결과를 기록·관리하지 아니한 자	법 제62조 제2항 제3호	150	300	500
로. 법 제46조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공시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	법 제62조 제2항 제7호	150	300	500
모.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법 제62조 제2항 제8호	150	300	500
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법 제62조 제1항	300	500	1,000
소. 법 제51조를 위반하여 공시기관의 지위를 승계하고도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법 제62조 제2항 제9호	150	300	500
오. 법 제51조를 위반하여 공시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도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법 제62조 제3항 제4호	100	200	300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친환경농어업에 대한 기여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친환경농어업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2. (생 략) 3.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축산물,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이하 "무농약농수산물등"이라 한다) 또는 유기식품등의 인증 실적 및 사후관리 실적 4. ~ 7. (생 략)	제2조(친환경농어업에 대한 기여도) ---------- 제16조제1항----------. 1.·2. (현행과 같음) 3. 유기식품등, 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무항생제축산물·무항생제수산물 --- "무항생제축수산물등"이라 한다)---------- 4. ~ 7. (현행과 같음)
제3조(유기식품등 인증의 소관) (생 략)	제3조(유기식품등 인증의 소관)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에 따라 유기식품 또는 비식용유기가공품의 소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 설>	제3조의2(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①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과징금을 낼 것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자는 납부 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의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경제 여건이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있는 경우
3.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면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 납부를 하려는 자는 그 납부기한의 5일 전까지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 납부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⑦ 제4항에 따라 분할 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 각 분할된 납부기한의 간격은 4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 납부가 허용된 과징금의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 납부하기로 결정된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2.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등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⑨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인증기관 지정 등의 평가) 법 제2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 다. 1. ~ 5. (생 략)	제4조(인증기관 지정 등의 평가) ----------말한다. 1. ~ 5. (현행과 같음)
제5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수입 유기식품등(비식용유기가공품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신고 2. (생 략) ② (생 략)	제5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 1. 법 제23조의2제1항 및 제4항 ----------(비식용유기가공품 및 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료는 ----------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생 략) <신 설> 2.·3. (생 략)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 중 임업 및 임산물에 관한 권한을 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1. (생 략) <신 설> 2. ~ 5. (생 략) 6. 법 제16조에 따른 유기식품등, 친환경농수산물 또는 유기농어업자재의 생산자, 생산자단체, 유통업자 및 수출업자에 대한 시설의 설치자금 등의 지원 7. (생 략)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 중 농업·축산업·임업,	1. (현행과 같음) 1의2.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평가 실시 결과 보고(제5조제2항제1호의 실태조사 및 평가에 한한다) 2.·3. (현행과 같음) ③ ----------. 1. (현행과 같음) 1의2.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평가 실시 결과 보고(제5조제3항제1호의 실태조사 및 평가에 한한다) 2. ~ 5. (현행과 같음) 6. 법 제16조제1항-- 유기식품등, 무농약원료가공식품---- ---- 7. (현행과 같음) ④ ----------

농산물·축산물·임산물(이하 "농림축산물"이라 한다) 및 농림축산물 가공품(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관한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제3조제1항제2호----------.
1. 법 제14조에 따른 교육·훈련	1. 법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 교육훈련기관의 지정·관리 및 지원
<신 설>	1의2.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
1의2. (생 략)	1의3. (현행 제1호의2와 같음)
2. ~ 4. 삭 제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6의2.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수입 유기식품등 중 비식용유기가공품의 신고의 수리	6의2. 법 제23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수입 유기식품등 중 비식용유기가공품 및 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료의 신고 수리
6의3.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수입 유기식품등 중 비식용유기가공품의 인증 및 표시기준 적합성 조사	6의3. ---------- 비식용유기가공품 및 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료----------

7. 법 제24조제1항(법 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의 취소 및 인증표시의 제거·정지 명령	7. ---------- 취소, 인증표시의 제거·정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신 설>	8의2.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
9. ~ 11의3. (생 략)	9. ~ 11의3. (현행과 같음)
11의4. 법 제26조의2제3항(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 취소·정지	11의4. ---------- 취소, 자격정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
<신 설>	11의5. 법 제26조의4제1항(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교육
12. 법 제27조제2호(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기관에 대한 접근 및 정보·자료 제공의 요청	12. 법 제27조제1항제2호----------
13. 법 제27조제4호(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기관의	13. 법 제27조제1항제4호----------

인증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 등에 대한 보고의 수리	----------
14. 법 제27조제5호(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사업자에 대한 불시(不時) 심사 및 그 결과의 기록·관리	14. 법 제27조제1항제5호----------
15. (생 략)	15. (현행과 같음)
16.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 및 그 처분사실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16. ---------- 지정취소, 업무정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 ----------
17. 법 제31조제1항(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품에 대한 시판품조사, 사업장에 대한 조사, 검사 시료의 무상 제공 요청과 검사 및 인증사업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17. ---------- 판매·유통 중인 인증품등에 대한 조사---------- 인증사업자등----------
18. 법 제31조제4항(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사업자 및 인증품의 유통업자에 대한 조치 명령	18. 법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사업자등에 대한 조사결과 통지, 재검사 요청 접수, 재검사 여부 결정 통보 및 재검사 결과 통보
18의2. 법 제31조제5항(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기관에 필요한 조치 요청	<삭 제>
<신 설>	18의3. 법 제31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사업자등에 대한 조치 명령, 인증품등의 압류 조치 및 조치 명령의 내용 공표
19. (생 략)	19. (현행과 같음)
20. 법 제32조제2항(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기관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	20. ---------- 지정취소, 업무정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
20의2. 법 제32조의2제1항(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기관의 평가·등급결정 및 결과 공표	20의2. 법 제32조의2제1항 및 제2항---------- 평가·등급결정, 결과 공표 및 등급결정 결과에 따른 인증기관의 관리·지원·육성
<신 설>	20의3. 법 제33조제2항 및 제3

	항(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위 승계 신고의 수리 및 통지
21. 삭 제	
22.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무농약농수산물등에 대한 인증	22. ----------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축산물 및 무농약원료가공식품---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신 설>	23의2.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제한적인 무농약 표시의 허용
23의2.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의 공시	23의3. ---------- 유기농업자재-------
23의3. 법 제4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지정 신청의 접수, 지정 갱신, 지정 변경 신청의 접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23의4. ---------- 유기농업자재 ---------- --
23의4.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시의 취소 및 판매금지 처분	<삭 제>
<신 설>	23의5. 법 제41조의2제2호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에 대한 접근 및 정보·자료 제공의 요청
<신 설>	23의6. 법 제41조의3제1항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에 대한 조사
23의5.·23의6. (생 략)	23의8.·23의9. (현행 제23호의5 및 제23호의6과 같음)
<신 설>	23의7.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시의 취소, 판매금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
23의7. ~ 23의9. (생 략)	23의10. ~ 23의12. (현행 제23호의7부터 제23호의9까지와 같음)
23의10. 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시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 및 그 처분 사실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23의13. ---------- 취소, 업무정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 ----------
24.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에 대한 시판품 조사, 공시사업자의 사업장에 대한 조사, 검사 시료의 무상 제공 요청과 검사 및 공시사업자에 대한 자료 제출 등의 요구	24. ---------- 판매·유통 중인 공시 받은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조사, 공시사업자등---------- 공시사업자등에 ---------- --
25. 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공시사업자 또는 유기농어업자	<삭 제>

재의 유통업자에 대한 조치 명령 및 공시기관에 조치 요청	
25의2. 법 제50조에 따른 공시기관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명령,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	25의2. 법 제4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공시사업자등에 대한 조사결과 통지, 재검사 요청 접수, 재검사 여부 결정 통보 및 재검사 결과 통보
25의3.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공시사업자 및 공시기관의 지위 승계 신고의 수리	25의3. 법 제49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에 따른 공시사업자등에 대한 조치 명령, 유기농업자재의 압류 조치 및 조치 명령의 내용 공표
<신 설>	25의4.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공시기관에 대한 조사
<신 설>	25의5.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공시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업무정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
<신 설>	25의6. 법 제5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시기관의 지위 승계 신고의 수리 및 통지
26. (생 략)	26. (현행과 같음)
26의2. 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26의2. ---------- 유기농업자재 ----------
27. 법 제5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인증사업자, 공시사업자, 인증기관 또는 공시기관에 대한 자금 지원	27. 법 제54조에 따른 인증제도 활성화에 관한 사항 추진 및 필요 자금 지원
27의2. (생 략)	27의2. (현행과 같음)
28. 법 제5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의 수납	28. 법 제56조제2항----------
29.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 취소 및 인증기관 또는 공시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29. ----------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인증심사원의 자격 취소, ----------
<신 설>	29의2.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인증사업자의 인증 취소 및 공시사업자의 공시취소에 대한 의견제출 기회 부여 및 청문
30. (생 략)	30. (현행과 같음)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 중 수산업, 수산물 및 그 가공품(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관한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⑤ ----------제3조제1항제1호----------.
1. 법 제14조에 따른 교육·훈련	1. 법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따른 교

	육·훈련, 교육훈련기관의 지정·관리 및 지원
<신 설>	1의2.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
1의2. (생 략)	1의3. (현행 제1호의2호와 같음)
2. 법 제20조제3항부터 제5항(법 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 심사, 인증 재심사 및 인증 변경승인	2. 법 제20조제3항, 제6항부터 제8항---------- 재심사, 재심사 여부 결정 통보, 재심사 결과 통보 --
3. 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법 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의 갱신 및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3. 법 제21조제2항부터 제6항---------- 포함한다)까지의 규정---------- 갱신, ---------- 연장, 재심사, 재심사 여부 결정 통보 및 재심사 결과 통보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7. 법 제24조제1항(법 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의 취소 및 인증표시의 제거·정지 명령	7. ---------- 취소, 인증표시의 제거·정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신 설>	8의2.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

9. ~ 11의3. (생 략)	9. ~ 11의3. (현행과 같음)
11의4. 법 제26조의2제3항(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 취소·정지	11의4. ---------- 취소, 자격정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
<신 설>	11의5. 법 제26조의4제1항(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교육
12. 법 제27조제2호(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기관에 대한 접근 및 정보·자료 제공의 요청	12. 법 제27조제1항제2호----------
13. 법 제27조제4호(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기관의 인증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 등에 대한 보고의 수리	13. 법 제27조제1항제4호----------
14. 법 제27조제5호(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사업자에 대한 불시 심사 및 그 결과의 기록·관리	14. 법 제27조제1항제5호----------

15. (생 략)	15. (현행과 같음)
16.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 및 그 처분사실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16. ---------- 지정취소, 업무정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 ----------
17. 법 제31조제1항(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품에 대한 시판품조사, 사업장에 대한 조사, 검사 시료의 무상 제공 요청과 검사 및 인증사업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17. ---------- 판매·유통중인 인증품등에 대한 조사---------- 인증사업자등----------
18. 법 제31조제4항(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사업자 및 인증품의 유통업자에 대한 조치 명령	18. 법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사업자등에 대한 조사결과 통지, 재검사 요청 접수, 재검사 여부 결정 통보 및 재검사 결과 통보
18의2. 법 제31조제5항(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기관에 필요한 조치 요청	<삭 제>
<신 설>	18의3. 법 제31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사업자등에 대한 조치 명령, 인증품등의 압류 조치 및 조치 명령의 내용 공표
19. (생 략)	19. (현행과 같음)
20. 법 제32조제2항(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기관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	20. ---------- 지정취소, 업무정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
20의2. 법 제32조의2제1항(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기관의 평가·등급결정 및 결과 공표	20의2. 법 제32조의2제1항 및 제2항---------- 평가·등급결정, 결과 공표 및 등급결정 결과에 따른 인증기관의 관리·지원·육성
21. 법 제33조제2항(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기관의 지위 승계 신고의 수리	21. ---------- 수리 및 통지
22.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무농약농수산물등에 대한 인증	22. ---------- 무항생제수산물·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23.·24. (생 략)	23.·24. (현행과 같음)
24의2. 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24의2. ---------- 유기어업자재 ----------
25.·25의2. (생 략)	25.·25의2. (현행과 같음)
26. 법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수수료의 수납	26. 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의 수납
27.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 취소 및 인증기관의 지정취소에 대한 청문	27. ----------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
<신 설>	27의2.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인증사업자의 인증 취소에 대한 의견제출 기회 부여 및 청문
28.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법 제20조제5항(법 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2조제1항(법 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2조제2항(법 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3조(인증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인증품의 포장을 해체하여 재포장한 후 제23조제1항에 따른 표시를 한 행위를 포함한다), 제26조제5항(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7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8조(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1조제1항(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2조제1항(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3조(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36조(인증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인증품의 포장을 해체하여 재포장한 후 제36조제1항에 따른 표시를 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만 해당한다]의 부과·징수	28. ---------- 법 제20조제8항---------- -- 제27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제3호----------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 중 수산업 및 수산물에 관한	⑥ ----------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평가 실시 결과 보고(제5조제6항제1호의 실태조사 및 평가에 한한다)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4. <삭 제>	<삭 제>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농업, 축산업, 임업 및 농림축산물에 관한 업무를「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식품연구원의 원장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친환경농어업 관련 민간단체의 장이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14조에 따른 교육·훈련 중 농업인 및 친환경농수산물 소비자에 대한 교육·훈련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우수	

사례의 발굴·홍보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제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제5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16조에 따른 시설의 설치자금 등의 지원에 관한 사무	2. 법 제16조제1항----------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제5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② ----------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 설> 1. (생 략) 2.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품의 유통업자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무 3. 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공시사업자 또는 유기농어업자재의 유통업자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무 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신 설>	----------. 1.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1의2. (현행 제1호와 같음) 2. 법 제31조제7항----- 인증사업자등---------- 3. 법 제49조제7항----- 공시사업자등---------- 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별표 2와 ----------. [별표 1]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3조의2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과징금 부과기준은 법 제2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최근 3년 동안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횟수는 위반행위를 한 인증사업자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 과징금 부과 대상은 2회 적발된 당시 인증의 유효기간 동안 유기식품등·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축수산물등(이하 "인증품"이라 한다)으로 판매한 물량(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운반 또는 진열 중인 물량은 제외한다)으로 하며, 3회 이상부터는 이전에 부과한 물량을 제외하고 해당 인증의 유효기간 동안 인증품으로 판매한 물량으로 한다. **2. 과징금 산정·부과 기준** 가. 판매금액은 제1호다목의 부과 대상 물량에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통관 단계 인증품의 판매금액은 세관 수입신고 금액으로 한다. 나. 판매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인근 인증사업자 3곳 또는 판매업체 3곳의 동일 품목 판매가격의 평균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평균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증을 받지 않은 동일 품목의 인근 판매업체 3곳의 평균 판매가격에 5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 산정은 가목 및 나목의 기준에 따라 계산된 판매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별표] <개정 2016. 12. 3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단위: 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법 제20조제5항(법 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해당 인증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고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한 자	법 제62조제1항제1호	50	100	150
나. 법 제22조제1항(법 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인증품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 실적을 알리지 않은 자	법 제62조제1항제2호	10	20	30
다. 법 제22조제2항(법 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법 제62조	10	20	30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단위: 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법 제20조제8항(법 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해당 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한 자	법 제62조제3항제1호	100	200	300
나. 법 제22조제1항(법 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인증품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 실적을 알리지 아니한 자	법 제62조제4항제1호	30	50	100
다. 법 제22조제2항(법 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법 제62조	30	50	100

다)을 위반하여 관련 서류 등을 보관하지 않은 자	제1항제3호			
라. 인증을 받지 않은 사업자가 인증품의 포장을 해체하여 재포장한 후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표시를 한 자	법 제62조제1항제4호	100	300	500
마. 법 제23조에 따른 표시기준을 위반한 자	법 제62조제1항제5호	10	30	50
< 신 설 >				
바. 법 제26조제5항(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중요 사항을 승인받지 않고 변경한 자	법 제62조제1항제6호	100	300	500
< 신 설 >				
사. 법 제27조제3호(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자	법 제62조제1항제3호	100	300	500
아. 법 제27조제4호(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인증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 등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법 제62조제1항제7호	100	300	500
< 신 설 >				

다)을 위반하여 관련 서류·자료 등을 기록·관리하지 아니하거나 보관하지 아니한 자	제4항제2호			
라. 인증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인증품의 포장을 해체하여 재포장한 후 법 제23조제1항 또는 제36조제1항에 따른 표시를 한 자	법 제62조제2항제1호	150	300	500
마. 법 제23조제1항 또는 제36조제1항에 따른 표시기준을 위반한 자	법 제62조제4항제3호	30	50	100
바. 법 제23조제3항 또는 제36조제2항에 따른 제한적 표시기준을 위반한 자	법 제62조제2항제2호	150	300	500
사. 법 제26조제5항 본문(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법 제62조제4항제4호	30	50	100
아. 법 제26조제5항 단서(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중요 변경사항을 승인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자	법 제62조제3항제2호	100	200	300
자. 법 제27조제1항제3호(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법 제62조제2항제3호	150	300	500
차. 법 제27조제1항제4호(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인증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 등을 거짓으로 보고한 자	법 제62조제2항제4호	150	300	500
카. 법 제27조제1항제4호(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인증 결	법 제62조제3항	100	200	300

자. 법 제27조제5호(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불시 심사 결과를 기록·관리하지 않은 자	법 제62조제1항제3호	100	300	500
< 신 설 >				
< 신 설 >				
차. 법 제28조(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 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고 인증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	법 제62조제1항제8호	100	300	500
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1조제1항(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법 제62조제1항제9호	100	300	500
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2조제1항(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법 제62조제1항제9호	100	300	500
파. 법 제33조(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인증기관이나 인증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도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자	법 제62조제1항제10호	100	200	300
< 신 설 >				

과 및 사후관리 결과 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제3호			
타. 법 제27조제1항제5호(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불시 심사 결과를 기록·관리하지 아니한 자	법 제62조제2항제3호	150	300	500
파. 법 제27조제2항제2호(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인증심사 업무를 한 자	법 제62조제2항제5호	150	300	500
하. 법 제27조제2항제3호(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인증심사 업무 결과를 기록하지 아니한 자	법 제62조제2항제6호	150	300	500
거. 법 제28조(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인증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	법 제62조제2항제7호	150	300	500
너.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1조제1항(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법 제62조제2항제8호	150	300	500
더.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2조제1항(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법 제62조제1항	300	500	1,000
러. 법 제33조(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하고도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법 제62조제2항제9호	150	300	500
머. 법 제33조(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62조	100	200	300

하. 인증을 받지 않은 사업자가 인증품의 포장을 해체하여 재포장한 후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표시를 한 자	법 제62조제1항제4호	100	300	500
거. 법 제36조에 따른 표시기준을 위반한 자	법 제62조제1항제5호	10	30	50
너. 법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시등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고 공시등을 받은 내용을 변경한 자	법 제62조제1항제1호	100	200	300
더.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시등을 받은 유기농어업자재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 실적을 알리지 않은 자	법 제62조제1항제2호	50	100	150
러. 법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련 서류 등을 보관하지 않은 자	법 제62조제1항제3호	50	100	150
< 신 설 >				
< 신 설 >				
머. 법 제42조에 따른 표시기준을 위반한 자	법 제62조제1항제5호	100	300	500
버. 법 제44조제4항을 위반하여 변	법 제	100	300	500

를 위반하여 인증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도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제3항제4호			
< 삭 제 >				
< 삭 제 >				
버. 법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시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시를 받은 내용을 변경한 자	법 제62조제3항제1호	100	200	300
서.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시를 받은 유기농어업자재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 실적을 알리지 않은 자	법 제62조제4항제1호	30	50	100
어. 법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련 서류 등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법 제62조제4항제2호	30	50	100
저. 법 제41조의2제3호를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법 제62조제2항제3호	150	300	500
처.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41조의3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법 제62조제1항	300	500	1,000
커. 법 제42조에 따른 표시기준을 위반한 자	법 제62조제3항제5호	100	200	300
터. 법 제44조제4항 본문을 위반하	법 제	30	50	100

경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중요 사항을 승인받지 않고 변경한 자	62조 제1항 제6호			
< 신 설 >				
서. 법 제45조제3호를 위반하여 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자	법 제62조 제1항 제3호	100	300	500
어. 법 제45조제4호를 위반하여 공시등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 등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법 제62조 제1항 제7호	100	300	500
< 신 설 >				
저. 법 제45조제5호를 위반하여 관련 불시 심사 결과를 기록·관리하지 않은 자	법 제62조 제1항 제3호	100	300	500
처. 법 제46조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고 공시등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	법 제62조 제1항 제8호	100	300	500
커.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법 제62조 제1항 제9호	100	300	500
터.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법 제62조 제1항 제9호	100	300	500
퍼. 법 제51조를 위반하여 공시등기관이나 공시등사업자의 지위	법 제62조	100	200	300

여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62조 제4항 제4호			
퍼. 법 제44조제4항 단서를 위반하여 중요 변경사항을 승인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자	법 제62조 제3항 제2호	100	200	300
허. 법 제45조제3호를 위반하여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법 제62조 제2항 제3호	150	300	500
고. 법 제45조제4호를 위반하여 공시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 등을 거짓으로 보고한 자	법 제62조 제2항 제4호	150	300	500
노. 법 제45조제4호를 위반하여 공시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 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법 제62조 제3항 제3호	100	200	300
도. 법 제45조제5호를 위반하여 관련 불시 심사 결과를 기록·관리하지 아니한 자	법 제62조 제2항 제3호	150	300	500
로. 법 제46조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공시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	법 제62조 제2항 제7호	150	300	500
모.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법 제62조 제2항 제8호	150	300	500
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법 제62조 제1항	300	500	1,000
소. 법 제51조를 위반하여 공시기관의 지위를 승계하고도 그 사실	법 제62조	150	300	500

를 승계하고도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자	제1항 제10호			
< 신 설 >				

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제2항 제9호			
오. 법 제51조를 위반하여 공시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도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법 제62조 제3항 제4호	100	200	300